#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오세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67

발의연월일: 2025. 3. 26.

발 의 자:오세희·박희승·이개호

윤후덕 · 황명선 · 이용선

임호선 • 박지원 • 김동아

민병덕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특약매입 등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,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납품 이후 최장 70일 동안 대금수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 업자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 특 히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모 든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일시 중단되었고, 제품 판매분에 대한 정산금 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 업자에게 상품의 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단 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.

이에 특약매입거래·매장임대차·위수탁매입거래 시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, 직매입거래 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40일이내로 단축하는 한편,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한 납품업자등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둠으로써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8조).

#### 법률 제 호

#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40일"을 "20일"로 하고,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60일"을 "40일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영세한 납품업자등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다만,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영세한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) ① 제8조제1항의 개정
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

-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②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통하여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8조(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) 제8조(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)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 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 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 ----. <u>다만, 자산</u>총액 또는 야 한다. <단서 신설>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영세한 납품업자등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 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 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 -----40일-----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 -----. 다만, 자산총액 또 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 하는 영세한 납품업자에 대해 서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

	지급하여야 한다.
③・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